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5호

발행일: 2025. 5. 15. (목)

제424회 국회(임시회, 2025. 4. 4. ~ 2025. 5. 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부동산 PF 관리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4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4월 4일부터 2025년 5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1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모두 3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4월 1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도 4건의 법률안(정부의 재의요구안 1건 포함)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424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정부 차원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강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과 민간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도시 내 유허부지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4회 국회의 2025년 4월 17일과 5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등 13인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의요구안)	김현 의원 등 17인
5	행정안전위원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2인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 등 12인
1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등 11인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등 11인
1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
2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등 13인
2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0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1인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2인
28	국토교통위원회(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 등 10인
3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1인
3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 손명수 의원 등 16인
35	여성가족위원회(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남희 의원 등 17인
36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피해자및 유가족의피해구제를 위한특별위원회(1)	12 · 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및유가족의 피해구제를위한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부동산 PF 관리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부동산 PF 관리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개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부동산 PF)이란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부동산경기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조달 경로가 제2 금융권을 포함하여 복잡·다양해졌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 위기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고 지속되는 공사원가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다른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구조는 △대출 금액 대비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연계된 구조로서 위험 발생 시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수(受)분

양자의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할 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위험요인을 지닙니다. 특히 손실 흡수능력이 낮은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건설기업이 워크아웃·법정관리를 진행할 경우 이는 다수의 협력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u>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u>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5-05-01 (수정 가결)

정책 동향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 7. 3.)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 *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
 - ** (정상 사업장)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 정상화 지원
-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급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발표
- 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 추진
- ②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
- ③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 ④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누리집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 1. 2.)

① 60조원 PF 시장연착륙 프로그램 운영 + 가계부채 안정 관리

- ① (부동산PF)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 PF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 * PF 사업자보증(35→4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 소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
- ② (가계부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 추진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7월, 잠정) 등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 추진
 - * (1단계) 은행권 주담대 →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 (3단계)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5. 1.)

- ④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 (청약)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청약 근절
 - (정책자금 관리)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금리 차등화 등 검토
 -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전세대출 보증 개선
 - 대출 조기상환 시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25.12)
 - * 디딤돌대출 실행 후 3년내 중도상환시, 상환 원금에 비례하여 수수료 1.2% 부과
 - (신유형 장기임대)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ISP) 등 건전성 제고
 - PF 구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출처: 2025년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누리집

참고 자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 11.
권영진 · 손명수 의원안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자료집](#)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PF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부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참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 「전세사기 특별법」 · 「지하안전법」 ·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KRIHS 보고서 2024. 10. 2.

- 부동산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 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 단계별로 위험 요인이 존재
- 부동산 개발 및 PF 관련 금융정보 시스템은 각각 관련 법 및 부처의 수요에 따라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어 시스템 간의 연계성이 낮은 상황으로 부동산 PF 위기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부동산개발 및 PF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별로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거시적으로 부동산 PF 부실화는 금리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관련성이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우발적인 특성)이 있으며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관련 지표, 사업주체의 유동성, 재무지표, 신용공여, 분양률, 공정률 등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필요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제134호 2024. 6. 20.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하여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주요 선진국 중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2-12 2023. 6. 24.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부동산 PF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본PF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며, 수(受)분양자의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본PF의 대출기관은 온전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부동산개발은 토지매입 시 시행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매입 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며, 선분양 시에도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아 대출기관의 담보권 확보가 용이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브릿지론을 본PF 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수분양자 자금을 이용하고 시공사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다양한 투자자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분양 비율을 축소하고, 중도금 비중을 줄여나감으로써 토지 및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개발이익의 평가에 기반한 부동산금융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개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3%로 확대하고, 무탄소 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1-1호 2050 탄소중립](#), [제2023-5호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제2023-11호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제2024-2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이슈 등 참조).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2025-05-01 (원안가결)

정책 동향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 1. 2.)

- ②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을 균형 있게 확충**^{역동}
- ❶ (보급 확산) 태양광·해상풍력 등 보급시 공공역할 확대, 비용저감, 공급망·안보 강화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마련(1분기)
 - ❷ (에너지 분산)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확대
 - 전력계통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공개 및 편의성 강화
 - * 계통관리변전소·접속가능용량 부족으로 전력망 보강 이후 연계가능) 안내, 출력제어 현행 등
 - SMR 등 첨단 분산형 전원 관련 국제협력·R&D 강화
 - ❸ (수소경제) 일반수소 및 청정수소발전 입찰 지속, 수소특화단지 단계적 확대 검토^(현재 2개소)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 강화
 - * 수소산업 거점 육성 필요 지역을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반기)해 예타사업 기획·신청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5. 1. 14.)

- 무탄소에너지 보급·활용 확대
- (전력시장) 증가하는 무탄소e 수용을 위한 시장개편 추진
 - * 직접 PPA(22), 배터리ESS 중앙계약시장(23), 재생e입찰·실시간시장(24, 제주) 등 도입
 - (전력망)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승인(24.2), 제주3연계선(24.9), 북당진-신당정(24.11) 등 '24년 72개 사업 준공(22년 대비 2배 이상)
 - (재생e) 해상풍력 입찰시장 개설(22.10), 산단태양광 개발지원 등 '30년까지 연평균 6GW 내외 보급 기반 마련
 - (수소)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3), 세계 최초 청정수소입찰시장 개설(24.5), 수소 특화단지 지정(24.11, 2개소) 등 생태계 조성 추진

출처: 2025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참고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영 의원안 등: 주차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2024. 11.

이용선 의원안: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 2024. 8.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 국회 1.5°C포럼 연속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회 공동연구보고서)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사업용 태양광 보급 3GW대 회복...2022년 이후 증가 추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5. 3. 18.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재생에너지 전력생산밀도)이 매우 많은 국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RE100 기업의 녹색프리미엄(녹색전기) 및 공급인증서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재생에너지의 입체적 개발·계획입지 제도의 활성화와 ②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수요 개발과 ③공급인증서 유통 규칙의 정비가 요구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5. 1. 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 전원구성,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 2038년 목표수요 129.3GW가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석탄·LNG·수소·암모니아 등 전원별 구성 비중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량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